

2018년 의정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7. 13. ~ 7. 20.(6일간)
- 감사분야 : 2015년 8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계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천원)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7건	15건(59명)	39,390	6	11	-	6	53	-	39,390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①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지급·관리 소홀

-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장비관리공무원"이란 소방장비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하며, 제19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1항에는 '장비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장비운영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소방장비별로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장비별로 각각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제1항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4조(안전장비의 정기점검 및 착용) 제2항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은 근무 교대 시, 현장투입 전·후, 그 밖에 필요한 때에는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출동시 보호장비 착용기준 별표3에 따라 완전하게 갖추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전남 영암 교통사고 현장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공중파 방송 노출(’18.5.1.), 충남 천안 ☆☆☆대 병원에서 구급차 도난사고(’18.5.8.), 서울 양천구 교통사고(’18.5.12.), 경남 밀양 구조대원 추락사고(’18.5.14) 등 안전사고와 관련 현장활동 중 안전관리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훈련현장에서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전 소방관서에서는 모든 재난현장 활동시에는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에 따라 완전하게 갖춘 후에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 대원 개인안전장비 착용 강화 계획 알림(본부 소방행정과-11869, ’18.05.23.)」을 통해 현장활동 및 훈련 중 직원 안전장구 미착용 및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휘관·소방관서장 경고, 안전사고 방지대책 발표 등 ‘현장지휘관, 소방관서장의 현장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하여 전소방관서에 전파하였다.
- 0000.00.00. 지방소방령으로 승진 임용되어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에 보임된 ♡♡♡는 현장활동대원의 필수장비인 개인보호장비의 지급을 당시 ◎◎◎◎단 물품담당자인 지방소방☆ * * *(’15.03.02~’17.07.31.)에게 개인보호장비 지급을 지시하였으나 미지급하였고,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자인 지방소방○ ♡♡♡(’17.08.01.~’17.11.16.), 지방소방☆ * * *(’17.11.17.~’18.04.08.), 지방소방○ ♡♡♡(’18.04.09 ~ 현재)로 사무가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물품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8.07.12. 의정부소방서 컨설팅 종합감사 당일까지 미지급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 또한 지방소방☆ * * *는 현장활동대원의 필수장비인 개인보호장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했으나, 현장대응☆☆단장(지방소방○ ♡♡♡)과 1년 4개월 동안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보호장비를 미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토록 노력하지 않는 등 현장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규정】·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조(정의), 제19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및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4조(안전장비의 정기점검 및 착용)
- 현장활동 대원 개인안전장비 착용 강화 계획 알림(본부 소방행정과 - 11869, ’18.05.23.)

② Ⅲ급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366호)」 제18조(예고문)에 따르면,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에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50조(파기)의 규정에 따르면,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완전히 소멸시킨후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9조(재분류 검토)에 따르면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 및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의정부 소방행정과에서는 ‘2018. 보안업무 추진계획’(소방행정과-944, ‘18.01.17)을 수립하고, 각 과·단, 대·안전센터에 ‘2018.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통보(시달)하여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대응단에서는 예고문에 의한 보존기간이 미도래한 Ⅲ급 비밀문서(원본)인 「2017년 을지연습시행계획(예고문 : 2022.12.31.)」을 재분류 없이 파기하는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8조(예고문)

·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50조(파기) 및 제19조(재분류 검토)

■ (재난대응·안전)

① 의용소방대 신분증명서 발급 업무소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신분증명서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현장대응단 지방소방△ ○○○은 2016년 개정된 PVC 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구매한 후 79명의 남·여의용소방대원에게 개정된 PVC 카드 신분증명서를 제작·발급하면서, 기존에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지 않았으며(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② 환자 이송 시 활력징후 측정 미작성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에 의하면 소방활동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화재경계지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특급·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대형화재취약대상은 연1회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필요시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道 대응구조구급과-1460(2018.1.15.)호 및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단-496(2018.1.17.)호 「2018년 소방활동 정보카드 일제정비 계획 알림」에 따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마친 후 센터 단위 내부결재 시 센터장 등 관리자는 건축물대장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바탕으로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 확인여부 후 결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소방활동 자료조사서 내부결재 시 추가자료(건축물대장, 현행화가 완료된 소방활동카드, 건축도면)를 첨부하여 결재 상신토록 지시하였음에도,
- ☆☆119안전센터 △ △ 등 18명은 2018. 1월 ~ 2018. 5월까지 감사대상기간동안 170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 확인 및 추가자료(건축물대장, 현행화가 완료된 소방활동카드, 건축도면)를 첨부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1조

- 道 대응구조구급과-1460(2018.1.15.)호 및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단-496(2018.1.17.)호, 「2018년 소방활동 정보카드 일제정비 계획 알림」

■ (예산·회계)

① 당직근무 중 부당 초과근무 실시

-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지급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의정부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 ***은 2017년 6월 18일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일직)근무에 임하면서 초과근무내역을 “음주운전 근절대책 전달교육”의 사유로 시간외근무명령을 승인 받은 후 당직근무 전·후에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당직근무 시간에 시간외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당직수당(60,000원)과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47,6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현장대응단 지방소방☆ ♡♡♡는 2018년 1월 14일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일직)근무에 임하면서 초과근무내역을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의 사유로 시간외근무명령을 승인 받은 후 당직근무 전·후에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당직근무 시간에 시간외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당직수당(60,000원)과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44,850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② 시설 하자검사 누락 등 업무처리 소홀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규정을 위배하여 「◎◎센터 오하수 배관 공사」등 4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회의 하자검사를 누락하였으며,
-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한 후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함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센터 오하수 배관 공사」등 3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 기일이 경과한 후에 최종검사를 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 책임기간의 존속기간), 70조(하자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예방·민원)

①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 ★★★ 외 2인 건물의 소방전기 시공업체의 책임기술자가 2018.01.01.에 변경되어 30일을 초과한 2018.03.21.일에 착공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과태료부과 및 업체 행정처분 없이 착공변경신고를 처리함.

【관련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②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미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 상기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 ★★★ 이동탱크저장소 양수자는 2018.04.02.일에 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매수)한 후 30일이내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 △△ 등 3대의 이동탱크저장소 피상속인은 2017.07.12.일에 이동탱크저장소를 상속받은 후 30일이내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음.

【관련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9(과태료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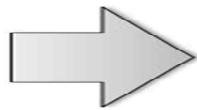
1 소·감 공감 OX퀴즈대회 개최 ※ 소(소화기) / 감(감지기)

 추진배경

- 주택화재 예방 전방위 홍보 강화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고취
-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조례

 추진방향

- 생활접점장소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신세계 관계자 대상으로 소방시설 OX퀴즈 경연대회 개최
 - 퀴즈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몸소 체험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법 쉽게 이해하는 계기 마련
- 현장대응훈련 병행 실시로 화재예방의식 고취



 기대효과

- 직원 및 관리단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소방안전 의식 증대
- 실전훈련과 병행 실시로 화재예방의식 강화